

권총 기술규칙 목차

| | | |
|-------|---------------------------|----|
| 8.1. | 총 칙 | 1 |
| 8.2. | 안 전 | 1 |
| 8.3. | 사격장 및 표적 기준 | 1 |
| 8.4. | 장비 및 실탄 | 1 |
| 8.5. | 복장규정 | 5 |
| 8.6. | 사격 부수장비 | 6 |
| 8.7. | 사격 경기절차 및 경기규칙 | 6 |
| 8.8. | 중단(방해) 및 비정상 사격 | 12 |
| 8.9. | 25m 경기 기능결함 | 15 |
| 8.10. | 전자표적(EST) 또는 종이표적 시스템의 고장 | 19 |
| 8.11. | 권총 경기 제원표 | 20 |
| 8.12. | 권총 규격표 | 21 |
| 8.13. | 권총 외형 그림(10m 및 25m 권총) | 22 |

(주) 그림 또는 도표에 언급된 특정 정보는 관련조항의 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권총 기술규칙

8.1. 총 칙

8.1.1 본 규칙은 ISSF 기술규칙의 일부로서 모든 권총 종목에 적용된다.

8.1.2 모든 선수, 팀 대표 및 임원은 ISSF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는 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8.1.3 본 규칙이 오른손잡이 선수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 역(逆)의 내용이 왼손잡이 선수에게 적용된다.

8.1.4 본 규칙이 특정한 성(남자 또는 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여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8.2. 안 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ISSF 안전규칙은 기술규칙 6.2 참조

8.3. 사격장 및 표적 기준

표적 및 표적 기준은 기술규칙 6.3 참조

사격장 및 기타 시설의 필요조건은 기술규칙 6.4 참조

8.4. 장비 및 실탄

8.4.1 모든 권총의 기준

8.4.1.1 **손잡이.** 손잡이의 치수와 세부내용은 **권총 규격표(8.12)**와 **권총 외형 그림(8.13)** 참조

a) 권총 지지에 도움을 줄 의도로 손잡이나 권총 일부분이 손목을 넘도록 연장 또는 제작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한다. 정상적으로 사격자세를 취했을 때, 손목이 확실히 보여야 한다. 권총을 파지한 손과 팔에 팔찌, 손목시계, 손목띠 또는 기타 유사한 품목의 착용을 일체 금한다.

b) 선수의 손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 가능한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손잡이는 규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손잡이 조정 부위는 규칙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위 장비검사의 대상이 된다.

8.4.1.2 **총열.** 권총 규격표 8.12 참조

8.4.1.3 조준장치

a) 개방된 조준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광섬유, 광학대나 색을 반사시키는 표면을 이용한 조준장치/가늀자는 금한다. 광학기, 거울, 망원경, 레이저 광선기기, 전자식으로 투영되는 점조준 장치 및

기타 조준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 b) 총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된 어떠한 조준장치도 사용을 금한다.
- c) 개방된 가늠쇠 및 가늠자에 보호용 커버를 부착하는 것도 금한다.
- d) 10m 및 25m 권총은 조준기를 부착한 채로 지정된 측정상자 안에 넣고 입회하여야 한다. (권총 규격표 8.12 참조)
- e) 교정렌즈 및/또는 필터를 총기에 부착할 수 없다.
- f) 선수의 교정렌즈나 안경 또는 필터나 옅은 색의 렌즈착용은 허용된다.

8.4.1.4

전자 방아쇠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a) 모든 구성물(부품)이 권총의 틀 또는 손잡이 내에 견고하게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는 경우.
- b) 권총을 파지한 손으로 방아쇠를 작동할 경우.
- c) 권총을 장비검사소에서 검사 시,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d) 모든 구성물을 포함한 권총이 해당종목 규칙에서 명시하는 수치 및 중량에 부합할 경우.

8.4.1.5

탄피 수거통은 수거통을 부착한 권총이 모든 규칙(치수 및 중량)에 부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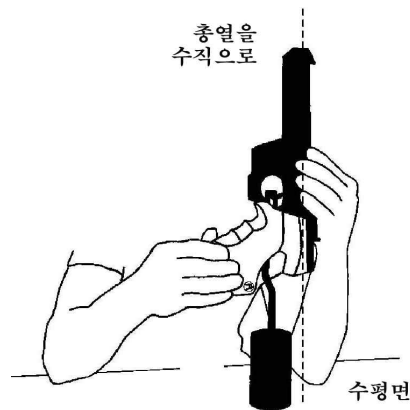
8.4.1.6

움직임 또는 진동 감소장치.

격발하기 전, 권총의 진동이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느리게 하거나 최소화하는 모든 설비, 기기 또는 시스템의 사용을 금한다.

8.4.2

방아쇠 무게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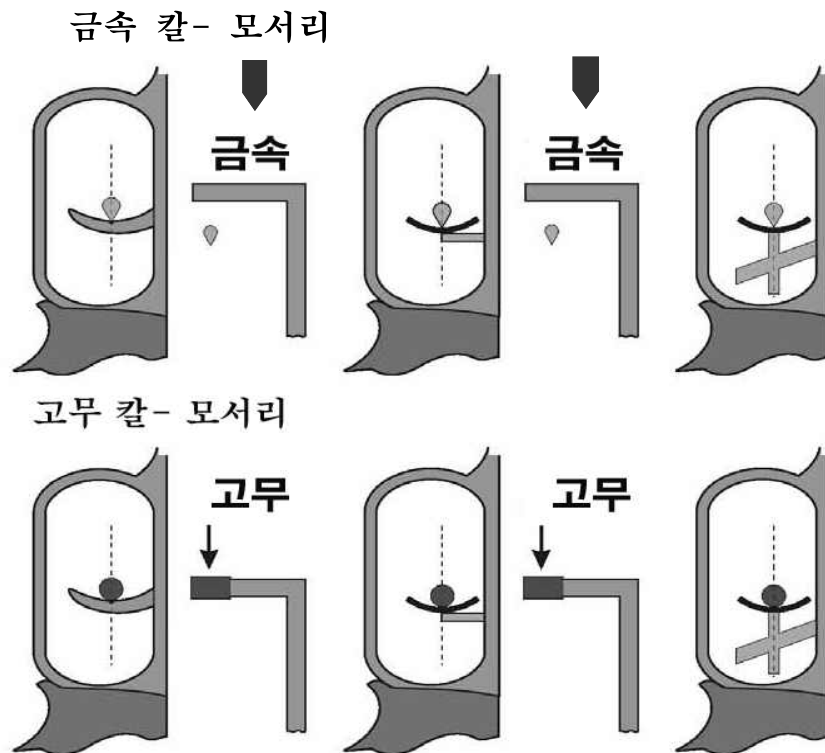


방아쇠 압력은 방아쇠의 중앙부위(그림 참조)에 측정추를 걸고 총열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추를 수평면에 놓고 수평면에서 명백히 떨어지게 수직으로 올려야 한다. 측정검사는 반드시 장비검사관이

하여야 한다. 방아쇠 최소압력은 해당경기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압력은 최대 3회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방아쇠를 조정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공기권총 검사 시, 충전된 추진 가스나 압축 공기가 방출되게 하여야 한다.

8.4.2.1

방아쇠 압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추의 끝 모양이 뾰족한 금속 또는 고무 재질이어야 한다. 측정추의 끝이 롤러 형으로 된 것은 불허한다. 측정추(dead weight)에 스프링이나 기타 장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고무쪽 그림 상이

8.4.2.2

훈련 및 경기 전, 중간 그리고 결선경기 시작 전에 선수가 사선에서 자신의 권총 방아쇠 압력을 재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2.3

10m 및 25m 종목의 모든 본선경기의 최종 시리즈가 종료되는 즉시 무작위의 방아쇠 압력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스탠다드 권총은 60발 사격이 끝난 후에 하거나 경기가 2개 스테이지(30+30)로 진행될 경우에는 매 스테이지 완료 후 검사할 수 있다. 장비검사 주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각 사선 구역(공기권총은 8개 사대)마다 최소 1명씩 검사 대상 선수를 선정한다. 장비검사관은 선수가 권총을 총통에 넣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 3회를 시도하고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장비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선수 또는 검사를 위해 권

총을 제시하지 않는 선수는 실격된다.

8.4.3 25m, 50m 및 10m 권총의 표준

8.4.3.1 25m 림파이어 및 센터파이어 권총

- a) 선수는 권총이 기능의 정지되지 않은 한 그 종목의 모든 스테이지나 시리즈에서 동일한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총구의 중심선은 정상적으로 사격자세를 취했을 때, 권총을 파지한 손아귀(엄지와 검지 사이) 위를 지나야 한다.

(권총 외형 그림 참조)

- c) 총열 길이는 아래의 부위를 측정한다. (권총 규격표 참조)

| | |
|-------|------------------------|
| 반 자 동 | 총구에서 약실 면까지 측정 (총열+약실) |
| 리 볼 버 | 총열만 측정 (실린더-통 제외) |

8.4.3.2 25m 림파이어 권총

단발 권총을 제외하고, 롱 라이플 탄을 장전하며 권총 규격표상의 규격에 부합하는 5.6mm(0.22 인치) 구경의 모든 림파이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8.4.3.3 25m 센터파이어권총

단발 권총을 제외하고, 권총 제원표에 부합하는 7.62mm(0.30 인치)에서 9.65mm(0.38 인치) 구경의 모든 센터파이어권총 또는 리볼버를 사용할 수 있다.

8.4.3.4 50m 권총

- a) 구경이 5.6mm(0.22 인치)이고 롱 라이플 탄을 장전하는 모든 림파이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 b) 50m 권총의 손 덮개는 손목을 덮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8.4.3.5 10m 공기권총

권총 규격표 및 권총 외형그림에 부합하고 구경이 4.5mm(.177 인치)인 공기 압축식, CO₂ 또는 공기압식의 공기권총은 어떠한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8.4.4 실 탄

모든 경기용 권총 실탄은 납 또는 유사한 부드러운 재질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피복 처리된 실탄은 사용을 금한다. 주리는 점검을 위해서 선수의 실탄 견본을 취할 수 있다.

| 종 목 | 구 경 | 기 타 조 건 |
|----------------|----------------------------|------------------------------------------------------------------------------------|
| 10m 공기권총 | 4.5mm (.177 인치) | |
| 25m 센터파이어권총 | 7.62~9.65mm (.3~.38 인치) | 고폭 또는 “매그넘” 탄은 사용 불허 |
| 50m 권총 | 5.6mm (.22 인치) | 림 파이어 롱 라이플 |
| 25m 림파이어 권총 | 5.6mm (.22 인치) | 림 파이어 롱 라이플 속사권총의 실탄 최소 중량 2.53g = 39gr, 최소평균속도 250m/초 총구 3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 |

8.4.4.1

탄속(실탄 속도)은 크로노그래프(탄속 측정기)로 측정한다.

기술대표는 ISSF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한 시험절차에 따라 크로노그래프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크로노그래프는 선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선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8.4.4.2

조별로 최소 1명의 실탄을 검사하여야 한다.

장비검사 주리는 검사 대상선수 선정을 감독하고 매 30발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검사할 실탄을 회수한다. 선수는 매 30발 스테이지 경기를 위해서 최소 50발의 실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리는 선수가 사용하는 실탄에서 10발을 취하여 표시된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측정임원에게 전달한다. 스테이지 경기 완료 후 검사대상자 선수는 측정소로 이동한다. 측정임원은 선수의 권총에 3발을 장전 후 사격하여 각 발의 탄속을 기록한다. 평균속도가 250m/초에 미달되면 이 측정을 반복한다. 총 6발의 평균속도가 250m/초 미만(아래)이면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8.5

선수 신발

8.5.1

발목뼈를 덮지 않는 옆면이 낮은 신발만 착용할 수 있다. (발목 복사뼈의 중앙과 옆보다 낮은) 발 전면부 전체의 밑창은 구부리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8.5.2

선수는 제거 가능한 신발 밑창이나 삽입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발 전면부가 구부러지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8.5.3

ISSF에서 승인된 검사장비는 신발 깔창의 유연성을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8.5.4

신발의 유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수는 경기구역에 있을 때 항상 정상적(발뒤꿈치-발끝)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본 규칙을 첫 위반 시 경

고가 주어지며 재차 위반 시는 2점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한다.

8.5.5 사격화 밀창 유연성 측정기기.

사격화 밀창의 유연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는 밀창에 위(上) 방향으로 정밀한 양의 압력을 가했을 때 몇 도 구부러지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5.6 사격화 밀창 유연성의 표준.

선수의 사격화 밀창은 검사기기에 고정시켜 뒷꿈치 부분에 15 뉴튼 미터의 힘을 가했을 때 적어도 22.5도 구부러져야 한다.

8.6 부수 장비

8.6.1 탄착확인용 망원경

탄착점 또는 풍향 확인을 위해서 권총에 부착되지 않은 망원경의 사용을 25m와 50m 종목에 한하여 허용한다.

8.6.2 권총 운반용 상자

선수는 권총과 장비를 사선에 가져가기 위해서 권총 운반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 결선 경기 시, 권총 운반상자나 장비가방은 경기구역(FOP)에 놓을 수 없다.

8.6.3 권총 지지 스탠드/지지대

선수는 사격 도중에 권총을 내려놓기 위해서 권총지지 스탠드/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다. 권총 지지대를 포함한 벤치나 테이블의 총 높이가 1.00m를 초과하면 안 된다(규칙 6.4.11.10 벤치의 최대높이가 1.00m임을 참조). 예선 및 본선 경기에서는 권총상자를 포함한 벤치나 테이블의 총 높이가 1.00m 이내면 권총 운반상자(규칙 8.6.2)를 권총지지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다. 결선 경기에서는 권총 운반상자를 권총지지 스탠드로 사용할 수 없다.

8.7 사격 경기절차 및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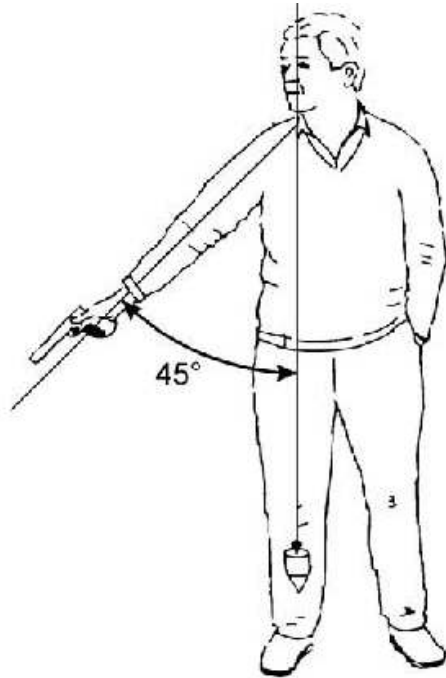
8.7.1 사격자세

선수는 양발 및/또는 신발로 사대 안에서 다른 인위적인 것 또는 다른 지지물 없이 완전히 서야 한다. 한손으로만 권총을 파지하고 사격하여야 한다. 손목에 어떠한 지지물도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7.2 준비자세

모든 25m 속사경기 종목, 25m 권총 및 25m 센터파이어 권총의 급사 스테이지 그리고 스탠다드 권총의 20초 및 10초 시리즈의 사격은 **준비 자세**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그림 참조). **준비자세**에서 선수의 팔은 수직

을 축으로 45° 이하의 각도로 지면을 향하여야 하며, 권총 들고 있는 팔이 사대의 앞쪽 모서리 안쪽 지면을 향하면 안 된다. 시리즈가 시작 되면 권총은 벤치나 사격 테이블로 받치면 안 된다. 표적 출현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는 전자표적인 경우 녹색등이 켜질 때까지 팔은 이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8.7.3

준비자세 위반

25m 속사권총 종목 또는 25m 권총이나 25m 센터파이어 권총 종목의 급사 스테이지 또는 25m 스탠다드 권총 종목의 20초 또는 10초 스테이지에서 선수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준비자세 위반으로 간주한다.

- a) 팔을 너무 일찍 올리거나 이 동작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의 한 부분일 경우(계속 동작)
- b) 팔을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 c) 표적 등이 바뀌기 전이나 표적이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팔을 45도 이상 들어 올린 경우

8.7.4

준비자세 위반 시 처리절차

준비자세 위반 발생 시:

- a) 주리가 경고를 주며, 그 시리즈를 기록하고 반복한다.
- b) 25m 속사권총 종목에서 시리즈를 반복하면 선수는 각 표적의 최하점수를 받는다. 기타 모든 25m 종목에서는 선수는 그 2회의 시리즈(또는 기능결함이 수반된 경우는 3회의 시리즈) 중 가장

낮은 5발의 점수를 받는다.

- c) 25m 속사권총 종목 또는 25m 권총이나 25m 센터파이어 권총 종목의 급사 스테이지 또는 25m 스탠다드 권총 종목의 20초/10초 혼합 스테이지 종목에서 30발의 동일 스테이지에 실수를 반복한 선수에게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그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한다.
- d) 본 규칙을 3회 위반한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8.7.5

권총 경기

규칙 8.11 참조, **권총 경기 제원표**

8.7.6

경기규칙

8.7.6.1

25m 경기의 준비시간

- a) 선수는 사선 도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대에 입회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 b) 준비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앞의 경기가 끝난 후에 수석 통제관은 선수가 본인의 사대로 위치하도록 호출한다. 그 구령에 따라서만 선수는 상자에서 권총을 꺼내어 취급할 수 있다.
- c) 주리와 사선통제관에 의한 경기 전 검사는 준비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d) 준비시간은 **“PREPARATION TIME BEGINS NOW”(준비시간 시작)** 이라는 구령으로 시작된다. 준비시간 동안 표적은 선수의 정면으로 보여야 한다. 준비시간 중 선수는 해당 사대에서 권총을 취급할 수 있고 공격발 및 조준연습을 할 수 있다.
- e) 경기시작 전에 허용되는 **준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 25m 스탠다드 권총 | 5 분 |
| 25m 완사 스테이지 | 5 분 |
| 25m 속사 스테이지 및 종목 | 3 분 |

8.7.6.2

25m 권총 종목의 특별규칙

- a) 모든 25m 경기는 녹색등이 점등(표적이 정면으로 향하기 시작)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적색등이 점등(표적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자표적 사용 시, 녹색등은 요구시간+0.1초(허용오차) 동안 켜진다.
- b) 표적의 회전이나 등의 스위치 작동은 사선 뒤에 위치한 표적 조작용이 관리할 수 있다. 표적조작용은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사선통제관이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표적은 사선통제관이 원격조종장치로 조작할 수도 있다.
- c) **“LOAD (실탄장전)”** 모든 25m의 연습 및 본선 경기시, **“LOAD”** 구령에 의해서만 단 1개의 탄창 또는 권총에 5발까지만 장전할 수

있다. 탄창 또는 실린더 내부에는 실탄 이외의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

- d) 실탄장전 구령 후 권총에 허용된 실탄(한 시리즈 또는 시리즈 완성용)보다 많은 실탄을 장전하거나 2개 이상의 탄창에 장전 시, 선수의 해당 시리즈 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 e) **“LOAD”** 구령 전에 발사한 선수는 실격된다.
- f) **“UNLOAD (실탄제거)”** 모든 경기 시, 시리즈나 스테이지가 완료된 후에 **“UNLOAD”** 구령이 주어진다. 선수는, 권총에 기능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리즈 완료 후에 즉시, 또는 요청 시 권총의 잔탄을 제거하여야 한다.

8.7.6.3

25m 속사권총 본선경기 특별규칙

- a) 60발을 2개 스테이지(각30발)로 나누어 실시한다. 각 스테이지는 총 6개 시리즈(각5발)로, 즉 8초, 6초 및 4초 사격을 각 2시리즈씩 나누어 사격한다. 시리즈별로 지정된 시간 내에 5개 표적에 각 1발씩 사격한다.
- b) 각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는 8초 1시리즈(5발)의 시사를 할 수 있다.
- c) 모든 사격(시사 및 본사 시리즈)은 구령에 의하여 실시된다. 동일 사선구역에 있는 선수 2명은 같은 시간에 사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직위는 중앙 통제실에서 동시 사격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사선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 d) 동시사격을 하는 중에 한 선수의 권총에 기능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기능결함이 발생한 시리즈는 바로 다음의 정규 시리즈 때 재사격을 하여야 한다. 이 선수의 최종시리즈는 모든 다른 선수가 해당 스테이지를 완료 후 행한다. 각 사선 구역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e) 사선통제관은 **“LOAD”** 를 구령하기에 앞서 시리즈의 시간(예: **8초 또는 6초 시리즈** 등)을 큰 소리로 알리거나, 선수가 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숫자판에 그 시리즈 시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선통제관의 **“LOAD”** 구령이 주어지자마자, 선수는 그 시리즈를 1분 이내에 준비하여야 한다.
- f) 1분이 경과하였을 때, 사선통제관은 다음과 같이 구령한다.

| | |
|-----------------------------|--------------------------------------------------------------------------------------------------------------------------------------|
| "Attention" (준비) | 표적이 회전하여야 한다. 전자표적일 경우, 적색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선수는 준비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 | 전자표적 사용시, 적색등이 점등되고 7초 (±0.1초) 경과 후, +0.1초(허용편차) 동안 녹색등이 점등된다. 종이표적 사용시, 표적이 측면 위치로 회전한다. 7초 (±0.1초) 경과 후, 표적이 선수를 향해서 정면으로 회전한다. |

- g) 선수는 각 시리즈 전에 팔을 내리고 준비자세를 취한다.
- h) **"ATTENTION"** 구령 7초(±1.0초) 후에 녹색등이 점등된다.
(종이표적 사용시, 표적이 선수 정면으로 향한다.)
- i) 녹색등이 점등되는(표적이 정면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권총을 들어 올릴 수 있다.
- j) 선수는 각 시리즈 동안 5발을 사격한다.
- k) 한 시리즈는 **"ATTENTION"** 구령이 주어진 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에 사격한 모든 탄은 본사탄으로 계산한다.
- l) 각 시리즈 사격이 완료된 후 다음의 **"LOAD"** 를 구령하기 전까지 최소 1분간의 휴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
- m) 공시된 조의 경기가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나의 조와 다음 조 사이의 인터벌은 최소 30분은 되어야 한다. 일정상 가능한 경우 더 긴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8.7.6.4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권총 특별규칙

총60발을 2개의 스테이지(각 30발)로 나누어 실시한다.

| 스테이지 | 시리즈/발 수 | 시사/본사의 시리즈별 제한시간 |
|------------|----------|------------------|
| 1. 완사 스테이지 | 각5발 6시리즈 | 5분 |
| 2. 급사 스테이지 | 각5발 6시리즈 | 아래내용 참조 |

- a) 선수는, 각 스테이지 시작 전에, 1시리즈(5발)의 시사를 할 수 있다.
- b) 수석통제관/사선통제관은 각 시리즈 전에 **"LOAD"** 구령을 한다. 선수는 1분 안에 정확한 수의 실탄을 장전, 준비하여야 한다.
- c) 시사 또는 본사 시리즈 완료 후 통제관이 **"UNLOAD"**란 구령을 한 후 다음 시리즈를 위한 **"LOAD"** 구령 전에 1분 동안의 휴지시간을 주어야 한다.
- d) 사격은 적절한 구령이나 신호로 시작된다.
- e) 모든 선수는 급사 스테이지 사격전에 완사 스테이지가 완료하여야 한다.

- f) 급사 스테이지는 각 시리즈동안 종이표적은 매발당 3초(-0.2초 +0.0초)간 5회 보이고, 전자표적은 녹색등이 매발당 3.1초간 점등된다.
 종이표적이 측면 위치에 있거나, 전자표적의 적색등이 점등되는 시간은 7초(±1.0초)가 되어야 한다.
 표적이 보일 때마다, 1발씩만 사격한다.
 전자표적은 3.1초 후에 녹색등이 소등되지만, 종이표적은 규칙 6.4.13에 따라 “후시간(after time)” 인 추가 0.2초 동안 유효탄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속된다.
- g) 모든 선수는 같은 시간에 동일한 구령 하에 시사 시리즈 및 본사 시리즈를 사격한다.

| | |
|--------------------------------------------------------------------------------------------|------------------------------------------------------------------------------------------------------------------------------------------|
| <p>“FOR THE SIGHTING SERIES-LOAD” (시사시리즈-실탄장전)</p> | <p>모든 선수는 1분 이내에 장전한다.</p> |
| <p>“FOR THE FIRST/ NEXT COMPETITION SERIES-LOAD” (첫/다음 본사 시리즈-실탄장전)</p> | <p>모든 선수는 1분 이내에 장전한다.</p> |
| <p>“Attention” (준 비)</p> | <p>전자표적 사용 시, 적색등이 점등된다. 7초(±1.0초) 후에 녹색등이 점등된다. 종이표적 사용 시, 표적은 측면 위치로 회전했다가 7초(±1.0초) 경과 후에 선수 정면으로 회전된다.</p> |

- h) 선수는 매발 사격하기 전에 팔을 내려 준비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i) 시리즈를 사격하는 동안 선수는 권총을 사격 책상이나 벤치에 받치면 안 된다.
- j) 한 시리즈는 **“ATTENTION”** 구령 후 적색등이 점등되거나 표적이 측면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사격한 모든 탄은 본사탄으로 계산한다.

8.7.6.5

25m 스탠다드 권총 특별규칙

총60발을 3개의 스테이지(각 20발)로 나누어 실시한다. 각 스테이지는 4시리즈(각 5발)로 구성된다.

| 스태이지 | 시리즈/발수 | 시리즈별 제한시간 |
|------|----------|-----------|
| 1 | 각5발 4시리즈 | 150초 |
| 2 | 각5발 4시리즈 | 20초 |
| 3 | 각5발 4시리즈 | 10초 |

- a) 본사 전에 제한시간 150초 이내의 시사 1시리즈(5발)가 허용된다.
- b) 수석통제관은 **"LOAD"**라는 구령을 하기에 앞서 시리즈 시간 (예: 150초 시리즈 또는 20초 시리즈)을 큰 소리로 알리거나 선수가 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숫자판에 그 시리즈 시간을 보여 주어야 한다.
- c) 사선통제관의 **"LOAD"**란 구령이 주어지자마자 선수는 1분 이내에 그 시리즈를 준비하여야 한다.
- d) 1분이 경과하였을 때, 사선통제관은 다음과 같이 구령한다.

| | |
|------------------------------|------------------------------------------------------------------------------------------------------|
| "Attention" (준 비) | 전자표적 사용 시, 적색등이 점등되고 7초(±1.0초) 후에 녹색등이 점등된다. 종이표적 사용 시, 표적은 측면으로 회전하고 0.7초(±1.0초) 후에 선수 정면으로 향한다. |
|------------------------------|------------------------------------------------------------------------------------------------------|

- e) 150초 시리즈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각 시리즈 전에 팔을 내리고 준비(READY)자세를 취한다.
- f) 한 시리즈는 **"ATTENTION"** 구령 후 적색등이 점등되거나 측면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사격한 모든 탄은 본사탄으로 계산한다.
- g) 경기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스태이지 | 시리즈/발 수 | 시리즈별 제한시간 |
|------|----------|-----------|
| 1 | 각5발 2시리즈 | 150초 |
| 2 | 각5발 2시리즈 | 20초 |
| 3 | 각5발 2시리즈 | 10초 |

- h) 각 부분의 경기시작 전에 150초의 시사 1시리즈(5발)가 허용된다.

8.8

방해 (중단) 및 비정상 사격

8.8.1

25m 종목 및 스태이지의 중단

(선수의 잘못이 아닌) 안전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사격이 중단된 경우;

- a) **15분 이상** 경과될 경우, 주리는 추가 시사 1시리즈(5발)를 부여하여야 한다.
- b) 속사권총 및 스탠다드 권총 : 시리즈가 중단된 경우, 그 시리즈는

무효로 하고 재사격하여야 한다. 재사격한 시리즈의 점수를 기록하고 인정한다.

- c)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 권총 : 방해받은 시리즈를 완료하여야 한다. 완료한 시리즈의 점수를 기록하고 인정한다.
- d) 완사 스테이지의 경우, 시리즈를 완료하기 위한 각 발당 제한시간은 1분이다.

8.8.2 25m 경기 및 스테이지에서의 비정상 사격

8.8.2.1 본사 초과탄 사격 (25m)

선수가 하나의 표적에 **권총 제원표**(규칙 8.11)의 발수를 초과한 본사탄(들)을 사격한 경우, 또는 속사 시리즈에서 표적 1개에 2발 이상 사격한 경우, 해당 표적의 최고점수를 상실탄으로 처리한다.

- a) 초과탄이 발생한 시리즈에서 초과탄 1개당 2점씩 추가 감점한다.
- b) 선수가 승인된 발 수 이상의 실탄을 탄창에 장전한 경우, 부가적으로 2점을 감점한다.
- c)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 권총의 급사 스테이지에서 표적이 한번 출현하였을 때 2발을 사격한 경우에도 매번 2점씩 감점한다.

8.8.2.2 시사 초과탄 사격 (25m)

선수가 **권총 제원표**(규칙 8.11) 또는 사선통제관이나 주리가 승인한 것보다 많은 시사를 하면 초과하여 사격한 각 발수당 2점씩을 첫 시리즈 점수에서 감점한다. 더불어, 선수가 승인된 발 수 보다 많이 장전한 경우 역시 2점을 추가로 감점한다.

8.8.2.3 조발 및 지발 (25m)

- a) **“LOAD”** 구령 후, 본사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우발적으로 발사된 탄은 본사 점수로 기록하지 않지만 그 다음 시리즈에서 2점을 감점한다. 이는 시사 시리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발 사격을 한 선수는 사격을 중지하고 다른 선수들이 그 시리즈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능결함처럼 사선통제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선통제관은 그 선수가 다음의 정규 시리즈에 재사격을 하고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락한다. 기능결함이 있었던 선수의 스테이지 최종 시리즈는 모든 선수들이 그 스테이지를 완료한 직후에 사격하게 된다. 선수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원래의 시리즈를 계속할 경우, 우발적으로 사격된 발사탄은 상실탄(0점)으로 기록된다.
- b) 완사 스테이지에서 **“STOP”** 구령이나 신호 후에 사격하면

상실탄으로 처리한다. 그 탄착(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표적의 최고점수(들)를 공제하고 상실탄(들)으로 처리한다.

8.8.2.4 시사표적에 교차사격 (25m)

선수가 다른 선수의 시사표적에 교차 시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재사격을 할 수 없으며 벌점은 부과되지는 않는다. 어떤 탄착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고 신속하게 알 수 없을 경우는 과실이 없는 선수는 해당 시사를 반복할 권리가 있다.

8.8.3 부정확한 사선 구령 (25m)

- a) 부정확한 통제(구령) 및/또는 사선통제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격 신호가 주어졌을 때 사격 준비를 하지 못한 선수는 총구가 사선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고 다른 쪽 손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그 시리즈가 종료되는 즉시 사선통제관이나 주리에게 보고한다.
- b) 이의가 정당하다고 간주되면, 해당 시리즈를 사격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c)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면, 사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리즈에서 2점 감점 처리한다.
- d) 부정확한 통제(구령)나 행동 후에 사격한 선수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8.8.4 방 해

사격 중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총구가 사선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손을 들어 사선통제관 또는 주리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이 때,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서는 안 된다.

8.8.4.1 이의가 정당하다고 간주된 경우:

- a) 속사권총 및 스탠다드권총 : 해당 시리즈를 취소하고, 재사격할 수 있다.
- b) 센터파이어 권총 및 25m 여자권총 : 그 탄을 취소하고, 재사격하여 해당 시리즈를 완료할 수 있다.

8.8.4.2 이의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경우:

- a) 선수가 시리즈를 종료한 경우, 해당 발사탄이나 시리즈 점수대로 기록 처리한다.
- b) 선수가 경기 방해를 이유로 시리즈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그 시리즈를 반복 또는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처리 및 벌칙 부과는 아래와 같다.
- c) 25m 속사권총 : 그 시리즈를 재사격하고, 각 표적의 최하점수를 합산

하여 기록한다.

- d) 25m 스탠다드 권총: 그 시리즈를 재사격하고, 그 표적의 최하점수 5발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 e)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 권총: 그 시리즈를 완료할 수 있으며 점수는 기록되어야 한다.
- f) 더불어, 재사격하거나 완료한 시리즈의 기록에서 2점 감점한다.
- g) 재사격하는 모든 시리즈는 그 표적에 5발을 모두 사격하여야 한다. 격발하지 않았거나 표적에 명중되지 않은 모든 탄(들)은 상실탄(들)으로 기록한다.

8.8.5 불규칙한 타이밍에 대한 이의제기

8.8.5.1

선수가 본 규칙에 기술된 구령 시점과 녹색등의 점등 또는 표적 출현시점의 간격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서 본 규칙에 기술된 타이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선수는 총구가 사선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고 다른쪽 손을 들어 즉각 사선통제관이나 주리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 a)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시리즈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b)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 시리즈를 사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리즈 기록에서 2점 감점한다.
- c) 이러한 이의는 시리즈의 첫발을 사격하고 난 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8.8.5.2

시리즈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는 선수는 그 시리즈가 끝난 직후에 즉각 사선통제관에게 알릴 수 있다.

- a) 사선통제관 및(또는) 주리는 시간작동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b) 결함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이의가 제기된 시리즈는 무효 처리하고 반복하여야 한다.
- c) 선수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 그 시리즈 결과는 선수에게 인정되고 그대로 기록한다.

8.9

25m 종목의 기능결함

8.9.1

모든 25m 종목

시사시리즈 동안의 기능결함은 이의 제기, 재사격 또는 완료할 수 없다. 그러나, 선수는 시사 시리즈동안 지정된 시간 내에 기능결함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미발사탄을 사격할 수 있다. 25m 권총의 각 본사 스테이지에서는 한번만 기능결함(허용 및 비허용 여부 불문)을 제기할 수 있다.

- a) 30발 스테이지 25m 속사권총, 25m 권총 및 25m 센터파이어 권총은 1회 허용

- b) 25m 스탠다드 권총은 150초 스테이지에서 1회, 20초와 10초 혼합 스테이지 중에 1회 허용
- c) 기능결함을 채점하는 모든 사항은 해당양식(RFPM 또는 STDP)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은 기술규칙 6.18 참조.
- d) 25m 결선에서의 기능결함(허용이나 비허용)은 규칙 6.17.4.m 또는 6.17.5.l 에 따라 결정한다.

8.9.2

웨손 총기의 수리 또는 교체

권총이 고장나거나 그 기능이 정지된 경우, 선수는 권총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수석통제관은 권총이 안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쥬리에게 알려야 한다.

- a) 경기 재개를 위하여 선수에게 권총을 수리 또는 교체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이다.
- b) 총기수리에 15분 이상 소요될 경우, 선수는 쥬리에게 요청하여 추가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 c) 추가시간이 인정될 경우, 선수는 쥬리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기를 완료한다. 또는 구경 및 작동기능(반자동 또는 리볼버)이 동일한 다른 권총으로 사격을 계속한다.
- d) 25m 권총 경기 시, 쥬리는 추가시사 1시리즈(5발)를 허용한다.

8.9.3

25m 권총 경기 시 기능결함

- a) 기능결함으로 인해 실탄이 발사되지 않았고, 그리고 선수가 기능결함 제기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총구가 사선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고 총을 왼 채로 다른 손을 올려 사선통제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 b) 선수는 기능결함의 수리를 시도 하고 시리즈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를 시도한 후에는, 공기가 부러졌거나 권총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권총 부속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 기능결함**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8.9.4

기능결함 유형

8.9.4.1

허용 기능결함 (AM):

- a) 실탄이 총열에 박힌 경우
- b) 방아쇠 작동이 안 되는 경우
- c) 방아쇠를 작동(격발)했으나, 실탄(불발탄)이 약실에 있을 경우
- d) 탄피가 방출 또는 제거되지 않은 경우; 이는 탄피 받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e) 실탄, 탄창, 실린더 또는 기타 권총 부속이 영킨 경우

- f) 공이가 부러졌거나, 총의 다른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
- g) 방아쇠를 작동(격발)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발사된 경우; 선수는 즉각 사격을 중지토록 하며 사선통제관 또는 주리의 허가 없이 그 권총을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EST(전자표적)를 사용한 경우, 연발된 발사탄 중 첫발이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되며 이 점수가 선수에게 주어진다. 종이표적 사용 시, 자동 발사된 탄이 표적에 명중했을 때, 그 시리즈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높은 위치에 맞은 탄착 점수를 무효처리한다. 시리즈를 반복한 후, 이 무효 처리한 탄을 제외한 모든 발사탄의 결과를 그 시리즈의 점수로 포함한다.
- h) 슬라이드가 걸렸거나 탄피가 추출되지 않은 경우.
이는 탄피 받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8.9.4.2

비허용 기능결함 (NAM):

- a) 선수가 노리쇠, 작동 부위 또는 안전장치에 손을 댔거나, 사선통제관이 검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권총을 만진 경우
- b) 안전장치를 개방하지 않은 경우
- c)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경우
- d) 규정 발수보다 적게 장전한 경우
- e) 이전 발을 사격 후, 방아쇠를 제자리로 충분히 돌려놓지 않은 경우
- f) 규격 이외의 실탄을 장전한 경우
- g) 탄창을 정확하게 끼우지 않았거나, 기능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격 도중에 탄창이 빠졌을 경우
- h) 선수 자신이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원인의 기능결함이 발생한 경우

8.9.4.3

기능결함의 원인 결정

기능결함의 명확한 원인이 총기의 외관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표시도 없고, 선수가 총열에 실탄이 박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경우, 사선통제관은 권총의 기능장치를 건드리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총을 올려 안전방향을 지향하고 방아쇠를 한번만 당겨서 그 선수가 격발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a) 해머가 젖혀져 있는 리볼버 권총일 경우, 사선통제관은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
- b) 권총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 사선통제관은 기능결함의 원인 규명과 허용 기능결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권총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c) 권총을 검사한 후에 사선통제관은 그 기능결함이 허용인지 비허용 인지를 결정한다.

8.9.4.4

사선통제관이 검사 후, 비허용 기능결함으로 판정할 경우, 사격하지 않은 모든 실탄은 상실탄(0점)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재사격 또는 해당 시리즈를 완료할 수 없으며 사격된 발사탄의 점수만 인정된다. 선수는 잔여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8.9.4.5

허용 기능결함의 절차 - 25m 속사권총 및 25m 스탠다드권총

- a) 25m 속사권총 또는 25m 스탠다드 권총 시리즈에서 **허용 기능결함**이 발생하면 기능결함 양식(양식 RFPM 또는 STDP)의 첫 줄에 발사탄의 점수를 기록하고,
- b) 선수는 재사격 시리즈에서 5발을 모두 사격하여야 한다. 해당 시리즈를 재사격한 후, 모든 점수를 기능결함 양식 두번째 줄에 기록하며, 표적에 맞추지 못한 탄 또는 지발은 사격 여부에 관계없이 0점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c) 재사격한 시리즈에서 두번째 기능결함이 발생하면 우선 기능결함 양식의 두번째 줄에 재사격한 시리즈의 점수를 기록하고, 다음에 어떤 시리즈(경기 시리즈/첫번째 줄 또는 반복 시리즈/두번째 줄)에서 많은 발수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중 많은 발수를 사격한 시리즈에서 사격하지 못한 발수를 0점으로 기록한다.
- d) 5발 시리즈의 합산점수를 결정하고 이것을 기능결함 양식의 셋째 줄(최종 점수)에 기록한다.
 - RFPM(속사권총 용 양식): 5개 표적별 최하점수 5발의 기록
 - STDP(스탠다드권총 용 양식): 기록된 전체 발사탄 중 최하점수 5발의 기록

8.9.4.6

**허용 기능결함의 절차 - 25m 권총 및 25m 센터파이어 권총
완사 및 속사 스테이지:**

- a) 발사된 탄 수는 기록하고, 시리즈를 완료할 수 있다.
- b) 해당 시리즈(시리즈 완료)를 완료하기 위한 사격은 바로 다음 경기 시리즈(완사 스테이지는 매 발 사격에 1분 허용)에, 또는 첫 표적 출현 시(급사 스테이지)부터 사격하여야 한다.
- c) 사격을 못하였거나 표적에 맞추지 못한 탄은 상실탄(0점) 처리한다.
- d) 5발 시리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채점하여야 한다.
- e) IR(사선 사고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시리즈 완료를 보고한다.

8.10

전자표적 또는 종이표적 시스템의 기능결함

8.10.1

사선의 모든 표적 또는 사선구역/표적군(색선)이 기능결함인 경우

- a) 수석통제관과 주리는 중단된 사격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b) 기능결함 전까지 완료한 모든 본사탄은 계산하고 기록한다. 사선이 정전된 경우,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표적을 통하여 사격발(탄착)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대 모니터를 통한 확인은 필요 없다.
- c) 표적의 기능결함이 수리되고 전 사선 또는 사선구역이 가동되면, 아래의 규칙에 따라 시리즈 재개에 앞서 1회의 시사 시리즈 및 1분의 휴식이 추가로 부여한다.
- d) **25m 권총 및 센터파이어 권총.** 허용 기능결함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5발의 시리즈를 완료한다. 고장이 발생 당시 표적에 기록되지 않은 발수만큼만 사격한다.
- e) **25m 스탠다드 권총 및 25m 속사권총.** 완료 또는 기록되지 않은 시리즈는 무효처리하고 재사격 한다. 5발 모두 기록된 선수가 있을 경우, 그 점수를 기록하고 해당 선수는 재사격을 할 수 없다.

8.10.2

단일 표적 또는 표적군의 고장

하나의 표적군(속사권총 표적5개) 또는 1개 표적에 기능결함이 발생하고 즉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사대로 이동하여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필요할 경우 다음 조에서 사격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다음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시사 및 1분간의 휴식을 준다.(8.10.1.c 참조)

8.10.3

발사탄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25m 전자표적 모니터에 기록 또는 표시되지 않았거나 예기치 않게 0점이 표시된 경우의 이의제기

- a) 25m 권총과 25m 센터파이어 권총 종목의 완사 스테이지 및 25m 스탠다드 권총 종목의 150초 시리즈 경기에서 선수는 (다음 발 사격 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선 임원에게 이상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 b) 25m 권총, 25m 센터파이어 권총과 25m 스탠다드 권총의 급사 스테이지 경기 시에는 선수는 5발 시리즈를 모두 사격하여야 하며, 시리즈 종료 후 즉시 가까운 사선 임원에게 이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 c) 선수는 주리가 지정한 시간 내에 시리즈를 완료한다.
- d) 시리즈를 재사격하지 않는다. 점수는 RTS 주리가 결정한다. 시리즈가 완료된 후에 전자표적 점검 절차(6.10.8 참조)를 실시한다.

8.11 권총 경기 제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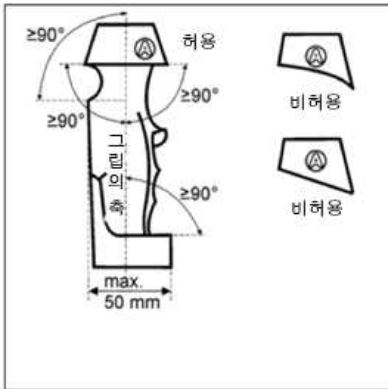
| 종 목 | | 발수 | 본사표적당 발수 (종이표적) | 시사표적수 (종이표적) | 시사발수 | 채점 및 치흔 (종이표적) | 사격시간 | 준비 및 시사 시간 |
|--------------------|--------|------------|----------------------------------------------------|-----------------|-------------------------------|-------------------|---------------------------------------------------------------------|------------------------------------|
| 10m 공기 권총 | 남 여 | 60발 40발 | 1 | 4매 | 준비 및 시사 시간 중 무제한 | RTS실 | 1시간 15분(남) 50분(여) EST가 아닌 경우 1시간 30분(남) 또는 60분(여) | 15분 |
| 50m 권총 | 남 | 60발 | 5 | 2매 | 준비 및 시사 시간 중 무제한 | RTS실 | 1시간 30분 EST가 아닌 경우 1시간 45분 | 15분 |
| 25m 속사권총 | 남 | 60발 | 각 스테이지/표적당 7발 (시사 1시리즈+본사 6시리즈) 각 스테이지 후 新표적 | | 각 스테이지 내 8초 사격 1시리즈(5발) | 매 시리즈 (5발) 후 | 각30발 2 스테이지*8,6,4초 각5발 시리즈 2회 | 준비시간 3분 |
| 25m 권총 | 여 | 60발 | 10 | 1매 | 각 스테이지 내 1시리즈 (5발) | 매 시리즈 (5발) 후 | 완사 스테이지(30발): 5분시리즈(5발) 6회 급사 스테이지(30발): 급사 시리즈(5발) 6회 | 완사 준비시간 5분 급사 준비시간 3분 |
| 25m 센터파이어 권총 | 남 | 60발 | 10 | | | | | |
| 25m 스탠다드 권총 | 남 | 60발 | 10 | | | | | |

8.12 권총 규격표

| 종목/권총 | 1) 권총 중량 2) 방아쇠 압력 | 측정함 (mm) | 총열길이 조준선 반경 | 손잡이 | 기타 세부내용 |
|----------------------------------------------------------------------------------------------------------------------------------------------------------------------------------------------------------------------------------------------------------------------------------------------------|------------------------------|----------------|----------------------|--------------|------------------------------------------------------------|
| 공기권총 | 1) 최대 1,500g 2) 최소 500g | 420×200 ×50 | 측정함 범위 내 | 하 기 참 조 | 1발만 장전 가능. 총안(銃眼)이 있는 총열 이나 구멍이 난 총열 부착물 허용 |
| 50m 권총 | 1) 무제한 2) 무제한 | 무제한 | 무제한 | 특수손잡이 허 용 | 1발만 장전 가능. 손목을 덮지 않는다면, 손덮개 허용 |
| 25m 림파이어 권 총 | 1) 최대 1,400g 2) 최소 1,000g | 300×150 ×50 | 최대 153mm 최대 220mm | 아 래 참 조 | 총구 제동기, 소형기, 구멍나 총열 또는 이와 동일한 방식의 기능이 있는 기구(들) 사용 금지 |
| 센터파이어 권 총 | 1) 최대 1,400g 2) 최소 1,000g | | | | |
| <p>(a) 공기권총 손잡이 : 손잡이 프레임 또는 부속의 일부가 손목 어느 부위에도 닿으면 안된다. 수도 받침은 손잡이 쪽에 대해서 90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손잡이의 옆부분 뿐만 아니라 전·후방 부분에도 적 용한다. 수도 받침의 위로의 만곡과 모지 받침의 위쪽 만곡부의 아래로의 만곡도 금한다. 모 지 받침은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잡이는 손을 에워싸면 안된다. 수도 받침 및 모지 받침을 포함하여 손잡이 또는 프레임의 수직방향으로의 굽은 표면은 허용된다.</p> | | | | | |
| <p>(b) 25m 권총 손잡이 : (a)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의 손 윗부분에 의탁하는, 즉 권총의 틀과 손잡이 끝 부위의 길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한다. 이 거리는 총강의 연장된 중심선을 직각으로 측정한다. 손잡이 끝 부위는 손에 닿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45도 이상 되게 절단되 어야 한다.</p> | | | | | |
| <p>(c) 권총 중량은, 균형추와 장전이 안된 탄창을 포함하여 모든 부속과 함께 측정한다.</p> | | | | | |
| <p>(d) 직사각형인 측정함 : 권총은 모든 부속품을 부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탄창을 사용하는 공기권총은 탄창을 제거하고 측정한다.) 각 치수당 0mm+1mm까지 오차가 허용된다.</p> | | | | | |

8.13 권총 외형 그림 (10m 및 25m 권총)

10m 및 25m 권총



10m 및 25m 권총



25m 권총에만 적용



25m 권총에만 적용

